

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(제25조제2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.

나. 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(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)하거나 감경(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, 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인 경우에는 사업정지 1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.

1) 가중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)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라)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감경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)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
		기간통신사업자	부가통신사업자
가.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	법 제20조제1항제1호, 법 제27조제1항제1호	등록취소	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
나. 법 제6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조제1항제2호	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	
다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조제1항제3호	사업정지 6개월	
라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(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)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조제1항제4호	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3개월	
마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	법 제20조제1항제4호의2	등록취소	

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		또는 사업정지 3개월	
마의2.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7조제1항제2호		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
바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6조제1항 후 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 업을 휴업한 경우	법 제27조제1항제3호		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
사.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아 방송미디어통신위 원회가 요청한 경우	법 제27조제1항제3호의2		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
아.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미디어통 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	법 제27조제1항제3호의3		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
자.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 물등의 삭제·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	법 제27조제1항제3호의4		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6개월
차.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·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 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	법 제27조제1항제3호의5		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3개월
차의2. 법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 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	법 제27조제1항제3호의6		등록취소
카.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 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20조제1항제5호	사업정지 3개월	
타.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 우	법 제20조제1항제6호, 법 제27조제1항제4호	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3개월	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3개월

<p>파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27조제1항제5호</p>		<p>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3개월</p>
---	---------------------	--	---

비고: 등록취소, 폐업명령 및 사업정지 처분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.